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8. 8.(수) 09:3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9차 및 제4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41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성방송국 신규 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8-42-421)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위성방송국 신규 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 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국 6개국 신규 허가에 대해 아래의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입니다. 권고사항(안)은 첫째,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의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국 6개국에 대한 신규 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8년 5월 4일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국 신규 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전파 및 방송 분야 허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9일 과기정통부는 신규 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하였고, 8월 6일 신규 허가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허가 신청의 주요내용입니다. 심사대상은 신규 위성방송국 6개국 개설로 무궁화 7호 위성의 중계기 6기를 추가 운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설목적은 UHD채널 등 초고화질 채널 운영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향후 22개에서 31개의 채널을 증설

할 계획입니다. 방송, 법률, 회계, 기술 분야의 외부전문가 4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기정통부의 심사의견서, 사업자의 허가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가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부가한 <붙임 2>의 신규 허가조건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성방송의 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2016년 11월 (재)허가 사전동의부터 권고사항으로 부가된 공익·장애복지채널 접근권 향상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전동의 심사위원회의 의견제시 내용과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신규 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국 신규 허가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신규 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국의 신규 허가 신청 목적이 초고화질 프리미엄 서비스 확대에 제시되었습니다. 사업 신청 내용을 보면 무궁화 위성 6호의 20여개 채널을 이번에 허가하는 7호로 옮겨서 화질 및 우천 시 끊김 현상을 개선하고 무궁화 위성 6호 여유대역을 활용해서 약 50개 채널의 화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화질 저하와 화면 끊김 현상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위성국 추가 신설을 통한 화질 개선은 시청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서 권고사항 부가조건의 원안 처리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위성방송은 특유의 광역성으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균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통일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전달해 줬으면 합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우리가 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할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사전동의 제도 또 그 전에 방송정책권의 소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동의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용자 보호 관점 그리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더 많이 보고 또 추가적인 조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것이지요? 심사에서 역점 사안이 그쪽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붙임 2>에 과기정통부 위성방송국 신규 허가 조건(안)들을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추가한 것도 있고, 시청자 보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SO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사전동의도 하고 의견도 주면서 점검하고 있는데 위성방송은 중간에 한 번도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이 신규허가 조건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신규 허가가 나갈 때 5년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부가했던 조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 매년마다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는 항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 꾸준히 사후점검하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은 하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절차적으로 사전동의를 해 줘야만 우리가 조건을 부가한 것들이 있고, 또 과기정통부 쪽에서 부가한 조건에 대해 우리가 약간 미흡하다면 보완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대로 가는 것은 이 조건에 우리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동의할 때만 그것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주기보다도, 특히 이용자 보호 관점,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우리가 점검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과기정통부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점검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 허가 권한은 과기정통부에 있어서 저희가 점검과정에서 참여하더라도 처분에

대한 결정은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무궁화 6호 위성이 꺾 찢기 때문에 7호 위성을 작년에 쏘아 올려서 커버리지 영역을 넓힌다, 이런 허가가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채널을 좀 더 고화질로 제공할겠다는 부분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관심이 앞서 고삼석 위원 말씀처럼 부가조건을 2년 전에 재허가를 내주면서 2개의 권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과 또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접근권을 향상 시켜라 이런 권고사항이 2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간에 이행실적 점검이 과기정통부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통보를 못 받으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술개발 투자 확대나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저가 편성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부가하는 건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 부가가 됐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붙임 2>에 있는 재허가 조건 부분이 지난번 2016년 초에 허가가 나갈 때부터 붙었던 조건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투자를 보면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을 읽어보면 '16년에 10억원, 작년에는 19억원, 올해는 9억원, 내년은 8억원, 또 '20년에는 3억원으로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자가 점점 감소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전반적으로 향후 채널을 UHD로 고도화하면 위성 임차비용들이 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개선 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좀 더 유지하거나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하나 2016년 11월 (재)허가 사전동의부터 이것을 부가했다는데 공익채널, 또 장애인복지 채널 이런 채널들을 저가 상품 쪽에 편성해 달라는 부가조건이 붙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떻습니까? 실태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 월 8,800원짜리 최저가 상품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공익 채널 중에서 절반 정도가 최저가 상품에 들어가 있긴 한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고가 상품 쪽에만 뒷 번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8,800원 정도 같으면 최저가로 따져도 다른 유료방송 케이블TV보다는 비싸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최저가 상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비싼 편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장애인복지채널은 저가 상품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장애인복지채널도 뒷번호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허 욱 부위원장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앞으로 역할은 더 커지고 또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런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저가 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행을 촉구해야 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권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과기정통부와 협조를 잘해서 우리도 그 실적을 받아볼 수 있게끔, 우리도 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 협조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충분히 저희가 이행점검을 할 때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아십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까지 저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제부터는 해야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이행점검한 결과만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이행점검 과정에서 그쪽에 실적을 제출하면 저희도 같이 실사를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권한 자체는 완전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 외에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업무분장이 다시 통합 조정될 때까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참여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지금 인공위성 몇 호기를 쓰는 것입니까? 그것 혹시 아십니까? KT가 인공위성을 여러 개

쓰고 연한이 지나면 폐기하고 또 새로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스카이라이프는 무궁화 6호 위성 18기 중계기를 쓰고 있고, 지금 7호 위성에 6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과기정통부 소관이긴 하겠지만 일본이 UHD를 8K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실히 대역폭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도 세계 추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4K로 가겠지만 8K로 갈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스카이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UHD가 8K로 갈 때에 대비해서 스카이라이프는 미리 위성에서 8K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원려(遠慮)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지상파의 주파수가 부족해서 아예 위성으로 가고, 위성 주파수가 많기 때문에 8K로 UHD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추세는 아직은 4K인데 UHD가 8K로 가면 훨씬 더 화면의 해상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을 때 우리는 4K로 가다가 갑자기 또 8K로 갈 수 있는 주파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스카이라이프라도 그런 데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단순히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염려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입니다. 현행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일부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 경과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가> 협찬고지 시점의 명확화입니다. 안 제8조, 제9호, 제11조 관련사항

입니다. 현행은 협찬고지 시점인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의 의미가 본방송 프로그램 종료 시에서 종료타이틀까지로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협찬고지를 본방송 프로그램 종료 시와 종료 타이틀 고지 시에 각각 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본방송 프로그램 종료 시와 종료 타이틀 고지 시 중에서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나> 협찬고지 방법의 합리화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관련사항입니다. 현행은 협찬고지가 협찬주명·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에 한해 가능하여 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고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기준에는 화면 하단뿐만 아니라 우측 스크롤 형식에도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규제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기존 고지내용 외에 홈페이지 주소에 대한 고지를 허용하고,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 확대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관련입니다. 현행은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의 협찬고지 횟수를 매 시간당 중앙지상파는 각 1회, 지역지상파는 각 2회, 유료방송은 각 3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매 시간당 중앙지상파는 각 2회, 지역지상파는 각 3회로 고지 횟수를 1회씩 확대하고자 합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2016년 3월 이미 고지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라> 기타 사항입니다. 규칙 시행 이전에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누명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위원회 의결과 10월 중 규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협찬고지에 있어서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현행 협찬고지 규칙의 고지시점이나 방법, 예고 횟수 등에 관한 것을 개선해서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16년에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화면 하단이 아닌 화면 우측에 고지한 위반사례가 총 29건이었습니다. 규칙 전체 위반의 약 1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이나 우측 중 방송사가 선택하도록 해서 협찬고지의 위치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지 시점도 방송 프로그램 종료나 종료타이틀 종료 후로 선택 범위를 넓혀 줘서 두 번 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돈되는 것을 1회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Key사의 수중계로 인해 로컬 프로그램에 협찬 고지를 못하고 있던 지역방송사들에게 프로그램 예고 협찬고지 횟수를 늘려준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방송사들이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협찬고지가 광고입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협찬고지와 광고는 다릅니다. 다만, 고지를 통해 광고효과를 일부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지 형식을 통해 사실상 광고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럴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내용에 보면 협찬고지 내용에 홈페이지 고지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광고효과가 일부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협찬고지가 광고가 아닌데도 마치 협찬고지를 광고처럼 운영해서 방송광고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관련된 규제 완화 이후 사후 모니터링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방송사업자들의 매출구조를 보면 협찬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찬고지 횟수를 늘려 주면 이것이 방송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찬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히 예상되는데 이것이 경영개선을 위해 이렇게 협찬고지를 더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이번에 협찬고지 횟수를 늘리는 것은 행사와 프로그램 예고에 한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모두 다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약간 있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행사프로그램 고지'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고입니다. 행사프로그램 예고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협찬은 앞서 표철수 위원님 지적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3년에 2,000억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3,900억원 수준, 약 4,000억원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이런 식으로 협찬이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종편은 의존도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고지에 관한 고시, 규칙을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방송법에는 '협찬고지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히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종편이나 지상파 할 것 없이 건강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어서 홈쇼핑과 연계편성되어서 거의 동 시간대에 뉴스를 보면서 또는 프로그램을 전하면서 바로 이웃 채널인 홈쇼핑에서 그것을 팔고 있는 것이 이런 연계 편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찬고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이런 일종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또 짜고 하는 그런 연계편성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물론 여기에 담지 못하지요. 방송법 모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협찬고지가 점점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장님, 연계편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협찬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반에서 이런 안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올해 안에 법률개정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하든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하든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협찬에 관한 것이 너무 미비한 것이 많고, 우리가 손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마저 한다면 협찬고지에 있어서 건강프로그램은 반드시 협찬주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고지해야만 시청자들이 보고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구나' 그렇게 되어야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입법과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구반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법에 들어가야 할 사항 그리고 시행령에 들어가야 할 사항, 그리고 규칙에 들어갈 사항 중심으로 해서 계속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난주에 협찬과 연계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하게 됐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미디어랩법 위반 여부 추가 조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요?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지금 조사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시장조사과와 방송기반총괄과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 관련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법·제도 외에는 없습니다. 협찬을 유치하는 과정, 그리고 협찬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가 유치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통계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협찬 관련해서는 협찬 총액 정도만 통계에 나오지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사업자들 보고의무도 없지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되는 사항이 협찬제도 운영의 불투명성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당한 협찬 유치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도와 연계해서 협찬주를 압박하는 영업행태 그리고 신문사와 연계해서 통합 마케팅을 하는 영업방식도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의 미비, 공백으로 해서 규제를 못 하는 것은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나서서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상당히 지적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몇 년째 계속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고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제도개선에 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활동하는 것은 필요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제도를 정비해 주고 어떤 내용을 정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국장님, 과장님은 방송정책을 오래 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방통위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 이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린 아까 홈페이지 광고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자율성 차원에서 보면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표 자체에 이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일부 사업자는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부 광고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협찬매출액 증가는 이 자료는 전체 모든 사업자의 협찬 매출액 증가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지상파 같은 경우 실제로 2013년에 2,000억원 수준에서 2,300억원 정도로 300억원 정도 증가했고, 다만 오히려 광고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협찬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종편이나 이런 쪽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편 횡수를 유료방송 쪽은 지난번에 '16년에 한번 횡수를 늘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횡수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준비 하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종편은 몇 회에서 몇 회로 묶여 있습니까? 3회로 묶여 있습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2016년에 이미 개정을 해서 지금 3회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3년인데 더 늘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2016년, 1년 반 전에 한번 늘렸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번 늘렸기 때문에?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광고라는 공개적이고 떳떳한 방법이 있는데 협찬에 의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협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협찬으로 하는 것입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어려운 질문인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을 집행하는 소스는 똑같습니다. 그것으로 광고를 집행할 것이냐, 협찬을 집행할 것이냐 하는 선택을 광고주가 하게 되는데, 통상 협찬은 보도기능을 가진데 유리합니다.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은 협찬이 많고 보도기능이 없는 곳은 사실상 거의 협찬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를 하면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매체에 누가 했는지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데 협찬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찬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통계도 정확히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물론 받고 그다음에 협찬하는 과정도 투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려면 현재 상태에서는 법령 개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그리고 행사 협찬이나, 시상품 협찬이나 이런 협찬의 종류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PBS가 공영방송이라서 광고를 못 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서 협찬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협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찬으로라도 프로그램 지원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나갑니다. 그것이 협찬이지, 우리는 떳떳하게 다 상업방송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가령 KBS1이 광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프로그램에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이름이라도 마지막으로 협찬자로 써 주는 것, 저는 협찬은 그런 것에 한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찬은 은밀하게 광고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금도 낼 것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수단으로 이용해서 굉장히 법적인 방법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광고를 할 수 없는 방법이 그러나 재정 사정이 나빠서 기업에서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좋아서 후원하는 경우에 미국의 PBS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서 공익성이 큰 프로그램들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예산지원이 적으니까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데 그 고마움을 협찬으로 맨 뒤에 '어디에서 지원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상업방송의 경우에는 협찬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고로 돌려서 떳떳하게 세금도 내고, 협찬으로 하면 세금도 내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편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더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교통방송(TBN)은 광고하지 않지요? TBN 교통방송은 제가 아는 한 광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어디에서 협찬했다'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니다. 아까 위원장님 하문하신 사항 중 ‘왜 협찬을 많이 하느냐?’, ‘협찬을 왜 선호하느냐?’ 그것이 비단 보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드라마도 협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판매에 직결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도 많다, 협찬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하튼 협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발전기금 징구 문제와 연계해서도 그렇고, 이 협찬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이것이 앞으로 이런 상태로 두면 이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김석진 위원님, 고삼석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앞으로 우리가 협찬을 비롯해서 광고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개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때 이 협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방송광고 쪽으로 옮겨 갈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광고를 할 수 없는 방송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름을 소개해 주어야겠지요. 협찬은 그런 것에 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추가 논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8분 폐회 】